

**고 시**

● **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82호**

**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오산세교2 A-12BL)**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80호(2013.12.30)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-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-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-12BL

(경기도 오산시 췌동, 금암동, 가장동 등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→ 공공분양]으로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